논문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김 현 진*

1. 머리 말
2. 18세기 이전의 기록관리 : 정치적 지식의 조직
3. 근대적인 담론의 형성 : 학문과 행정 사이의 아카이브
4. 바이마르 시대 :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5. 자유로운 출처주의와 사회적 표상
6. 맺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독일 기록관리 이론의 역사를 평가론 중심으로 개괄한다. 18세기 이전 독일의 기록관리의 목표는 법률적, 정치적 지식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록 소유자의 법률적 권리보전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증명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서들만 선별, 관리되었다.

19세기에, 구체제의 붕괴로 보호해야 할 특권이 없어지면서 기록관리의 목적은 연구기능을 지향하게 되었다.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어 집적된 기록들을 조직하기 위해 출처주의가 확립되

* 독일 튀빙엔대학교 박사과정

었고, 학문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내용지향적인 평가방식이 선호되었다.

1차 대전은 현대 기록학 이론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전쟁수행 중 생산된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처리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종전 이후의 민주화 분위기와 결합하여 출처 지향적 평가론이 형성된다. 기록의 가치는 생산기관의 업무와 활동을 증거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다.

나찌 시대를 지나 온 전후 독일의 反관료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처 지향적 평가론 대신 내용지향적인 평가방식이 다시 등장한다. 봄스로 대표되는 이 이론은 20세기 후반 다큐멘테이션 전략 이론의 토대가 된다.

주제어 : 독일의 기록관리, 아카이브권, 평가론, 출처주의, 봄스

1. 머리말

기록관리 담론은 기록관리를 왜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하며, 그에 대한 해답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요청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의 종점은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평가론으로 귀결된다.

기록관리 담론의 역사를 살펴볼 때, 행정조직이 비교적 단순하고 생산되는 기록의 양이 많지 않던 시기에는 기록의 분류와 정리 문제가 담론의 중심이 되었던 반면, 기록의 양이 폭증하고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다변화되면서 기록 평가의 문제가 담론의 전면에 떠오르고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일단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데 비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이론의 장단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평가론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상황이다. 그리하여 평가는 아키비스트의 작업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분야로 간주되면서도, 열매보다 잎만 무성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현대기록학 평가론에 대한 천착이 적잖이 이루어져 왔다.[1] 특히 최근에는 그 이론들을 분석하고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기록의 평가과정에 접목시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2] 있는데, 이는 평가론 논의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진일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록학 이론들이 대부분 쉘렌버그에서 비롯되는 현대 영미권의 이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현대 기록관리 이론의 근저에 쉘렌버그가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쉘렌버그 이론의 모태가 되었던 미국의 기록관리 관행이라는 것이 유럽적인 전통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쉘렌버그 이전에 있어 왔던 유럽의 기록관리 담론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현대기록학 이론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쉘렌버그의 이론 자체가 독일 기록관리 담론의 영향을 받

---

1) 김익한, 「기록물 관리체제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 제11호, 1998
이상민, 「영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제14호, 2001
김명훈「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록학연구』 제6호, 2002
김명훈「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기록학연구』 제11호, 2005
오항녕 편역, 『기록학의 평가론 』 진리탐구, 2005
이승억 「기록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공문서군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12호, 2005
김익한,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제13호, 2006

2) 이승일 2005, 김익한 2006

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3], 이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독일 기록관리의 역사 속에서 기록관리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이 평가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대 기록학 이론들을 이해하고, 그 이론들이 기록관리 담론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18세기 이전의 기록관리

독일 지역 영방국가들의 아카이브의 역사는 대략 13세기 정도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 아카이브와 제국도시 아카이브의 역사가 각각 약 8세기와 11세기에 시작되는 것에 비해 많이 늦는데, 그것은 십자군 전쟁 이후 로마제국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독일지역 영주들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4]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을 놓고 볼 때 기록학 이론과 실무에 관한 독일 최초의 저술은 1571년 라밍엔(Jakob von Rammingen)이 발표한 글[5]이다. 그는 아직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등록소(Registratur)[6]를 정치와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기관(Kanzlei) 및 재무기관

3) Angelika Menne-Haritz, Das Provenienzprinzip- ein Bewertungssurogat? in: Archivar 47(1994) pp.229-252

4) Georg Wilhelm Sante, Deutsche Geschichte, Archive, Probleme, in : Der Archivar 13(1960), Sp. 172

5) Jakob von Rammingen, Von der Registratur und jren Gebäuwen und Regimenten..., Heidelberg 1571, Kaiser,Aus der Entwicklung der Archivkunde, in : Archivalische Zeitschrift 37 (1928) pp.98-99에서 재인용; Brenneke pp.45-46 참조. 라밍엔의 이 글 원문을 읽어보지 못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이 글의 한계이다.

6) 등록소'로 번역되는 Registratur는 실제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14세기

(Rentkammer)과 함께 필수적인 제 3의 통치기구(Regiment)로 간주했다. 등록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신들과 문서들을 관리, 보존하는 담당자들, 즉 아키비스트는 그 문서들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주권자와 통치당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무엇을 증명하고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등록소는 본질적으로 영방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통치자의 심장, 위로이고 보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심장이자 보물이기도 한 것"[7]이었다. 왜냐하면 각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법률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1586년 바이에른의 빌헬름 5세가 공포한 아카이브령(Archivinstruktion)[8]

경,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주요사안들을 책으로 된 업무일지에 등록하거나 필사본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Registrator이고, 이 시기를 Buchregistratur 시대라고 불렀다. 이 시기 Registratur는 '등록소'라기 보다는 '등록부'이다. 15세기가 되면 행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양피지 대신 값싼 종이가 사용되면서 문서생산이 많아지고 집적된다. 그리하여 Registratur는 문서대장에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행정기관 내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하는 등 문서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서 자체를 지칭하거나 문서보관 공간을 의미하기도 했다. 라밍엔이 말한 Registratur는 이런 상황이 발전된 형태로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문서관리기구의 운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소'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17/18세기가 되면 활용이 끝난 행정문서들이 현용기록과 분리되어 아카이브로 이관되면서, Registratur는 현용기록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통제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18세기 후반 이후 문서가 견고하게 편철되고 정교한 문서관리계획(Registraturplan)이 수립되며 각종 문서관리 양식과 대장들이 등장하는 등 오늘 날 서구의 고전적인 형태로 간주되는 문서관리체계가 수립된다. 그리고 18세기까지는 각 행정기관에 하나의 Registratur가 있었지만, 19세기에 국가가 비대해지고 행정기관의 규모가 팽창하면서 한 기관의 중앙문서관리기구 하위에 부서별 문서관리기구들이 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Gerhart Enders, Archivverwaltungslehre, Berlin 1968, pp.29-36; Brenneke, p.13,21, 현용기록의 수발신을 통제함과 동시에 활용이 종료된 기록을 아카이브로 이관할 때까지 관리하는 부서라는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서과와 자료관이 결합된 성격을 갖는다.

7) Brenneke, p.45

도 아카이브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 그리고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표현하며, '아카이브 전문가'를 배치하여 '중요한 기록들을 관리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키비스트의 의무로는 공증인에 의한 적법한 필사본을 작성, 비치하는 것, 국내외에 흩어져있는 주요 증서나 문건들을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완전하게 구성하는 것, 기록의 대출·반납 상황을 잘 관리해서 분실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사본을 대출할 것, 매월 아카이브의 활동내역을 보고할 것, 합병된 지역의 기록들에 대해 보고하고 잘 관리할 것, 그리고 특히 법률, 정의 또는 왕실소유지와 관련된 유용한 기록들을 부지런히 찾아내고 보고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어 1640년, 선제후 막시밀리안 1세가 공포한 아카이브령(Archivordnung)[9]에서는 內治관련 아카이브와 대외관계 아카이브가 구분되고, 전자에는 원본 증명서들 외에 왕실의 법적 권리 및 상속권에 대한 법률감정서들을 보관했다. 이것은 왕권과 정치적 권한을 보호·확장하기 위한 무기고로 간주되었다. 후자에는 로마제국과의 외교관계 문서, 이웃 국가들과의 조약문서, 및 국경관계 문서 등을 보존하도록 했다.

한편, 1664년 발표된 프리취의 글[10]에 따르면, 아카이브의 본질적인 목적은 소송이나 그 밖에 증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증빙문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아카이브를 설치한다는 것은 주권의 발현이므로 황제와 각 영방국가의 영주만이 아카이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아카이브권 Ius Archivi, Archivrecht)을 갖게 되고, 백작이나 남작의 경우 제국 직속일 경우에만 고려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

8) Bayerische Archivinstruktionen aus dem 16. und 17. Jahrhundert, in : Archivalische Zeitschrift 9(1884), pp. 90-94

9) Bayerische Archivinstruktionen aus dem 16. und 17. Jahrhundert, in : Archivalische Zeitschrift 9(1884), pp. 94-98

10) Ahasver Fritsch,, Tractatus de jure archivi et cancellariae, Jena 1664. Kaiser p.100 및 Brenneke 46-47에서 재인용.

카이브란 각 영방국가와 제국도시들에만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외에도 많은 아카이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주목하면서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프리취의 의도였다.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법률을 통해 어떤 기관이 증명서의 진본성을 공증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중앙권력의 통제권이 약했던 신성로마제국 시대에는 아카이브권을 가지는 기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증명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 및 소송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법조계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이후까지 계속된 아카이브권 논쟁을 프리취가 정리한 것이다.[11]

그는 아카이브권을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아카이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적극적인 아카이브권이고, 아카이브에 따라 그것이 소장하고 있는 증서들의 증거능력이 다르게 평가되는데, 이것을 그는 소극적 아카이브권이라 부른다. 황제나 선제후의 아카이브에서 나온 기록은 법정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반면, 소위 가짜 아카이브의 자료들은 그 증거능력을 훨씬 적게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745년에 제기된 한 소송은 프리취의 이 정의가 실제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12]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이 아카이브권 이론은 신성로마제국이 붕괴하고 나서야 극복되고, 그 결과 비로소 기록의 가치는 그것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

11) Ernst Pitz, Wolfenbuettel, Beitraege zur Geschichte des Ius Archivi,(이하 Ius Archivi) in : Der Archivar 16(1963), 279ff.

12) Ernst Pitz, Wolfenbuettel, Ius Archivi는 1745년 한 대학이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청구소송에서 자체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던 소작세 관련 편지를 증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한 소극적 의미의 아카이브권 논쟁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법정은 그 대학의 아카이브권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해당 지역 영주에게로 보내고, 영주는 1770년 그 대학에는 아카이브권이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라고 판결한다.

자체의 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나 개인의 아카이브들도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13]

기록관리의 목적이 단일하고 중요한 기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비교적 통일되어 있었던 18세기 이전 기록관리에서의 쟁점은 분류론이었다. 법률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필요한 기록을 찾아 보고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당면과제였던 것이다. 행정구조가 비교적 단순했던 18세기 이전에는 영방국가별 기록관리에서 기록의 연원이란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기록관리는 개별 문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관성에 따라 기록을 분류했다. 기록의 '내용'이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점만이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아카이브권이론에서 보듯이, 제국 전체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황제와 영방국가간 그리고 영방국가들 내부에서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교섭관계가 충돌할 경우, 기록의 가치는 출처, 즉 기록의 생산자와 보존 장소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기록의 연원이 입증된 내용만이 증거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황제와 선제후에 의해 생산되고 보존된 기록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카이브권 이론은 생산기관의 위상을 평가의 준거틀로 하는 출처주의 평가 방식을 연상시킨다. 실제 기록관리 관행에서도 원래의 기록물군에서 일단 떨어져 나갔던 기록물은, 기록물군에서 떨어져나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완전히 유효한 기록물로 회복되지 않고 기껏해야 컬렉션의 형태로 다시 편입될 수 있을 뿐 이었다[14]. 결국 기록의 증거적 가치는 본원적으로 그 내용만으로는 입증될 수 없고, 그 기록의 애초의 생산 연원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

13) Brenneke p. 47.
14) Brenneke, p. 47

이다. 특히 기록의 법률적, 행정적 증거가치가 강조될 때 기록의 연원이 갖는 비중은 더 커질 것이며, 이 때 출처는 기록의 증거가치를 유지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18세기 이전의 아카이브는 국가의 심장이자 중요한 통치기구로 간주된, 비밀 아카이브형태였다. 기록관리의 목표는 기록 소유자의 법률적,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법률적 권리보전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증명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서들만 선별하여 관리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최소한 18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고, 19세기 초반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15]. 이렇게 볼 때, 이 시기의 아키비스트는 법률적, 정치적 지식을 조직하는 전문가였다. 아키비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 고문서학 그리고 법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근면성, 인내심, 과묵함 그리고 신실성"을 갖추어야 한다[16]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이 담당했던 업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아키비스트에게는 왕과 함께 국가 주요사안을 합의하여 결정하던 "평의회원들과 같은 지위 및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당대 아키비스트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었다.[17]

3. 근대적인 기록관리 담론의 형성

18세기에 활동했던 아키비스트이면서도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이론가로서 슈피스(Spieß)가 있다.[18] 그는 왕가의 법

15) Johann Stephan Pütter는 그의 저서(Anleitung zur juristischen Praxis I., Göttingen 1758)에서 아키비스트의 임무는 "자신의 주군의 권리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라고 했고, 19세기로 접어든 시기의 Bachmann(1801)도 아카이브를 '국가의 심장'으로 표현했다.

16) Pütter, Anleitung, p. 292

17) Karl Friedrich Bernhard Zinkernagel, Handbuch fuer Archivare und Registratoren, Noerdlingen 1800, pp. 274ff

18) Philipp Ernst Spieß, Von Archiven, Halle 1777

적 권리 보다는 대외정책적인 관점에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모든 행정관계에 적용되는 기계적인 분류계획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며 "증서들 스스로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조직할 것을 권했다.[19] 더 나아가 아키비스트의 학문적인 자질을 중시하면서, 아카이브가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20]. 18세기 후반(1777)에 발표된 그의 글은 19세기 중반의 담론에 매우 가깝다. 출처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과, 아카이브의 사적/학문적 이용이라는 관점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역사상의 많은 변화들이 그렇듯이, 근대적 아카이브의 형성에도 프랑스혁명이라는 한 사건의 갑작스런 충격만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 내적 추동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것이었고, 아카이브조직과 기록관리 방식이 전반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하게 된 데는 프랑스혁명과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그리고 그에 뒤이은 구체제 특권제도의 붕괴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카이브에 그 소유주의 법률적인 증빙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던 많은 기관들이 해체되었고, 따라서 행정기관과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아카이브의 법률적인 중요성은 감소되었다. 아카이브는 더 이상 "주군의 심장" "국가의 흉패" 등으로 지칭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조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역사연구를 위한 자료들이 집적되어 있는 아카이브는 지식인・역사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직면해서 아키비스트들은 향후 아카

19) 브레네케와 카이저는 슈피스의 분류론이 출처주의의 선구적 형태라고 평가한다. Brennke p. 50; Kaiser, Aus der Entwicklung der Archivkunde, in : Archivalische Zeitschrift 37 (1928)

20) 이전에도 학문적인 이용은 있었지만, 이론적 논의에서 아카이브가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Brenneke p.50.

이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잡지를 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카이브에 '學'이라는 어휘를 결합, 오늘 날과 같이 "기록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잡지였다[21]. 이 잡지들은 아카이브 및 기록학의 역사적인 전환기에 아키비스트들이 했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주권자의 권리보호나 대외관계에서의 증거보존 역할이 약화되면서 촉발된 아카이브의 목적설정에 대한 논쟁을 잘 보여주는 저술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간행된 기록학 잡지였다. 이 잡지의 첫 번째 논문을 쓴 메뎀(F.L.von Medem)[22]은 제국의 해체와 세속화로 기존의 행정기관과 아카이브들이 통폐합되는 상황과 그 결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 아카이브의 경우, 새 소유주들이 아카이브에 대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됨에 따라 그 소장 자료들은 자유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국가 입장에서는 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기관으로 조직하려고 한다. 그 결과 아카이브는 과거를 다루는 연구자들과 현재의 행정관료 모두에게 똑같이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아카이브 및 아키비스트는 학문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 특히 역사학의 발전과 맞물려서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더 치중하는

21) 1806년에 바이에른에서 처음으로(Paul Österreicher und F. Döllinger, Zeitschrift für Archivs- und Registraturwissenschaft, Bamberg 1806), 1834년에는 프로이센에서 두 번째로(L. F. Hoefer, H. A. Erhard, F. L. von Medem, Zeitschrift für Archivkunde, Diplomatik und Geschichte, Hamburg 1834-1836) 간행되었지만 곧 절판되었고, 1876년 바이에른 국립아카이브 총재 명의로 발행되기 시작한 "Archivalische Zeitschrift"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독일 기록학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그 후에도 C. A, Burckhardt, Correspondenzblatt der deutschen Archiven Leipzig 1878-1881가 간행되다가 절판되었다.

22) Friedrich von Medem, Zur Archivwissenschaft, in: Zeitschrift für Archivkinde, Diplomatik und Geschichte 1, 1834, p..1-51

양상을 보인다.[23] 아키비스트들은 스스로 여러 역사학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논문들을 기고했고, 대학들은 역사학과에 고문서학(Diplomatik) 및 고서체학(Paläographie) 등을 개설하여 아키비스트 지망생들을 교육하면서 기록관리 분야는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24].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기록학 이론가는 에어하르트(H. A. Erhard)[25]이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아카이브란 업무수행과정에서 형성되고 종료되어 역사적인 관계를 위한 증거로 이용되는, 문자로 기록된 소식들의 모음"인데, 여기서 지칭되는 '종료' 개념이 매우 엄격하다. 단순히 한 사안이 기획되고 결정되어 실행이 완료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사안이 추후 어떤 사안과도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완전히 역사화된 사안만을 의미한다. 그가 보기에, "아카이브는 유사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두 기관과 이웃하고 있다 : 한편에는 도서관, 다른 한편에는 행정기록보존소(Registratur)[26]가 그것이다. 전자는 역사와 관련되고 역사를 위한 증거로 이용되는 그런 수집품들을 포괄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업무수행과정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것을 보존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이에 비해 후자는 문자기록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섭내용(Verhandlung)들을 포괄하지만,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에어하르트가 생각하기에 아카이브는 역사적으로 종료된 자료를 다루므로 외부적인 관계에 변화가 생겨도 내적인 제도에

23) Gerhard Pfeiffer, Das Berufsbild des wissenschaftlichen Archivars, in : Der Archivar20(1967) sp. 40-42

24) 1852년 설립된 "독일 역사 및 고대연구회 연합회"에서는 역사가들과 함께 "역사와 보조학문"이라는 분과에서 활동했다.

25) Heinrich August Erhard, Ideen zur wissenschaftlichen Begründung und Gestaltung des Archvwesens, in: Zeitschrift für Archivkinde, Diplomatik und Geschichte 1, 1834,

26) 준현용기록보존소를 의미한다.

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더 가깝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도서관과 같이 조직되어야 하고,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학문에 복무하는 것이므로, 국립아카이브는 연구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아카이브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중세의 증서들뿐만 아니라, 완전히 종료된 사안을 담고 있으면서 '역사인식을 위해 중요한' 행정기록들도 확보해야 한다. 아카이브의 존재목적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결국 기록의 중요성과 보존가치를 결정하는 가치척도와 폐기지침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회퍼(L.F. Hoefer)[27]는 '종결된 사안'에 대한 에어하르트의 정의가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기록보존소와 아카이브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행정기록보존소와 아카이브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기록관리 조직 이었다. 그래서 기록관리 담당자를 지칭하는 Registrator와 Archivar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었다. 18세기를 전후하여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행정기록이 증가하면서 각 기관마다 기존의 기록보존시설로는 계속 축적되는 기록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록들을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과거기록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와 현재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록보존소로 이분되는 관행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카이브는 실용적 필요성에 있어서 "덜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생겼다. 그러나 회퍼가 볼 때 양자는 애초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조직이다. 아카이브는 어차피 행정기록보존소로부터 계속 자료를 넘겨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아카이브'가 될 수 밖에 없다-, 행정기록보존소로서도 행정상의 필요가 없어진 기록들을 어떻게든 처리해

27) L. F. Hoefer, Über Archive und Registraturen, in: Zeitschrift für Archivkinde, Diplomatik und Geschichte 1, 1834, p..248-258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당면한 문제는 행정기관이 통폐합 또는 해체되는 상황에서 생산된 행정기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카이브와 연계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에어하르트와 회퍼 논쟁의 와중에서 메뎀(von Medem)은 양자를 아우르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아카이브를, 과거의 기록들을 다루는 증서보존소(Unkundenarchiv)와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기록들을 관리하는 행정기록보존소(Archivregistratur)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행정기관의 활동 및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아카이브와 행정기록보존소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관이어서 어느 한쪽의 종속성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증서보존소의 업무는 학문에 근접한 데 비해 행정기록보존소 업무는 행정활동이 지배적이라고 하면서, 아카이브의 책임자는 학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으로써, 심정적으로는 아카이브의 학문적 기능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19세기의 아키비스트들은 아카이브의 행정적 기능과 연구기능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며 기록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평가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아키비스트들은 원본증서 중심의 전통적인 선별주의를 지향했다[28]. 그러나 보호해야 할 특권이 없어지고,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게 되면서 증서 중심의 선별방식으로는 학문과 행정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카이브와 행정기관들의 통폐합으로 갑작스럽게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비현용 기록들의 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현실적인

28) Paul Österreicher und F. Döllinger, Zeitschrift für Archivs- und Registraturwissenschaft, Bamberg 1806

필요성을 잃어버린 기록더미들을, 그냥 모두 폐기하기에는 보존자로서의 본능과 학문적인 관심이 허락하지 않고, 선별을 하자니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카이브를 학문기관으로 간주하여, 아카이브와 행정기록보존소를 엄격히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에어하르트는[29] 아카이브에 보존할 기록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면서, 관련 현용기록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완전히 종결된 업무에 관한 기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적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매우 상세하게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평가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가관련 증서는 보존대상이다. 개인 증서는 1400년 이전의 것이거나, 특별히 중요한 가문이거나 정치적, 학문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증서, 역사나 헌법제도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 및 흥미로운 대상에 대해 증명할 경우 및 형식적인 측면에서 특히 특별한 성격을 가질 경우 아카이브에 보존한다.
2. 일반 행정기록도 증서만큼 중요하다. 증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가르쳐주지만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가르쳐주지는 않으므로 증서에만 의존할 경우 충분한 역사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서와 행정기록은 함께 보관해서 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정기록이란 통치자 관련기록, 독일제국 관련 기록, 주군과 신하 사이의 관계 관련, 헌법이나 국가행정에 대한 규정들, 외국관련 기록들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기록들 중에는 중요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섞여 있으므로 그 중에서도 선별해야 한다.

29) Heinrich August Erhard, Ideen zur wissenschaftlichen Begründung und Gestaltung des Archvwesens, in: Zeitschrift für Archivkinde, Diplomatik und Geschichte 1, 1834, p..188-200

법률적 증거가치와 원본증서를 위주로 하던 18세기 이전의 평가방식과 비교할 때, 기록의 역사적 가치에 주목한 에어하르트의 관점은 평가의 지평을 확대한 것이었다. 국가관련 증서나 정치적, 학문적으로 유명한 개인의 증서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대상에 대해 증명하거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성격을 가질 경우에도 영구보존할 것을 주장하는 점이 그렇고, 행정기록의 중요성을 증서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점도 그렇다. 또한 에어하르트는 평가 업무가 "아카이브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의심스러우면 폐기하지 말고 보류해 둘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지침은 근대적인 평가지침의 선구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론을 두고 볼 때 19세기는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어하르트의 관점은 역사적 증거로서의 가치만을 중심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면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서, 법률적, 정치적 가치만을 고려했던 전근대 기록관리 담론이 겉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타난 것과 같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정기록'의 범주도 철저히 정치사적인 관점에 한정되어 있어서, 역사의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편협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 부각되기 시작한, 아카이브의 행정적 기능에 대한 고려는 아예 도외시되고 있다. 이 측면과 관련해서는 회퍼의 관점이 훨씬 선진적이었음을 앞에서 보았다. 그는 기록의 평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카이브와 현용기록 및 행정기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기록관리의 선구적 형태를 보여준다. 19세기 아키비스트들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과거에 비해 생산된 기록의 양은 급증했고 보존기록을 선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더 다양해진 근대사회 기록학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 이후 기록의 양은 더욱 폭증하게 되고,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더욱 다양해진다. 이는 평가론의 양상 또한 더욱 복잡해질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립아카이브들이 교회기록들을 비롯해서 기존의 행정체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질적인 기록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기록의 정리문제가 기록관리의 긴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관되기 이전의 기록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관리방법이었으므로, 출처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출처주의에 관한 초기의 문헌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그것이 학문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 확실하게 규명하기는 힘들다[30]. 다만 여러 가지 파편적인 사실들을 통해 볼 때 19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출처주의가 독일 아키비스트들 사이에 친숙한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료제의 발달로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행정기록의 집적이 심화되면서, 17/18세기의 아키비스트들도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한 기관에서 파생된 기록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관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31]. 앞에서 본대로, 이미 1777년 슈피스의 글에서 기록의 연원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고, 1819년 프로이센 비밀 국립아카이브의 長이었던 라우머(Raumer)의 주장에서 기록의 연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발견한다.[32] 또한 프로이센 아

30) Kaiser, p. 108

31) Gerhart Enders, Archivverwaltungslehre, 1968 p.99

32) 당시 문화부장관 알텐슈타인(Althenstein)이 국립아카이브를 역사영역과 국법(헌법, staatsrechtliche) 영역으로 분리하려고 할 때, 라우머는 주제별 체계화가 현 기록과 옛 기록을 연결하는 실마리를 잘라버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현재의 질서 속에서 "모든 필요한 기록들을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inhold Koser, Die Neuordnung des Preußischen Archivwesens durch den Staatskanzler Hardenberg, Leipzig 1904, S.4. Angelika Menne-Haritz, Das Provenienzprinzip- ein Bewertungssurogat? Neue Fragen einer alten Diskussion, in : Der Archivar 47(1994) H. 2, Sp. 246 (각주 47)에서 재인용

키비스트 에어하르트는 이미 1834년에 출처는 기록의 파편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기록을 '행정기관의 연원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강하게 거부한다. 그가 특별한 설명 없이 출처의 원리를 언급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로서, 당시 이미 출처주의가 지배적인, 또는 적어도 많이 채택되는 정리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기록관리기관들이 기록의 정리원칙으로 출처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네덜란드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이론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33]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많은 양의 기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원칙으로서의 출처주의는, 20세기 들어 평가영역에서도 응용되기 시작한다. 현대 독일기록관리 이론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메네-하리츠는 평가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구조 중심적인 것과 내용지향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출처주의를 평가의 방법적인 기초로 삼는데 비해, 후자는 출처주의와 분명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정리한다[34]. 앞서 본 에어하르트의 평가론은 기록의 연원이나 맥락에 대한 관점 없이 학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지향적인 평가방식의 전형이다. 그는 기록의 정리에서도 출처주의를 거부했다. 이에 비해 회퍼는 기록의 평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카이브와 현용기록 및 행정기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20세기 기록관리이론의 흐름에서는 아카이브의 행정적인 기능이 부각되면서 회퍼의 관점에 더 근접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제의 해체 이후 일어났던 또 한번의 기록폭발, 즉 1차대전을 계기로 촉발된다.

---

33) 출처주의에 대해서는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 기록관리』; 방효순,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제2권 제2호 (2002.9) 참조

34) Menne-Haritz, Provenienzprinzip, in: Archivar 47(1994) Sp. 231

4. 바이마르시대 :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1차대전 수행을 위해 조직되었던 기관들이 종전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전쟁 중에 생산된 기록들이 한꺼번에 아카이브로 이관되어 오면서 이제 막 업무가 종료된 방대한 양의 기록들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19세기 구체제의 몰락과 세속화로 인해 기록관리를 재조직해야 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기록폭발 상황에서, 기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평가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준거로 그 기록의 기원이 되는 생산주체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록 생산자의 가치를 기록의 가치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정리 원칙으로서의 출처주의에 이미 익숙한 아키비스트들로서는 방대한 양의 기록을 생산자 그룹별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 역시 익숙한 일이었고, 개별기록의 가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관이 생산한 기록은 중요한 기록'이라고 평가하는 방식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전쟁수행으로 국가조직이 비대해지고 그 조직들의 사회적 기능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상황이어서, 조직상 위계가 높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의 내재적 가치가 우월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병사평의회가 조직되고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여 공화국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당대에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한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화 바람은 기록관리 영역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19세기 중반 이래 담론의 주류를 형성해 온 아카이브의 학문적 기능 외에, 행정활동을 추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능(Nachvollziehbarkeit)이 기록관리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프로이센 아키비스트 찌펠(Ernst Zipfel)[35]은 프로이센 아카이브의 평가의 목표는 미래의 이용자들이 전쟁 기구의 설립과정에 대해 알 수 있고, "그 기구들이 어떻게 일했으며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그리고 전쟁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하는데 있었다" 고 보고한다. 18개 항목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에는 행정조직의 성립과 업무내역, 강제경제의 실행 그리고 사기업의 반응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당시 프로이센 국립아카이브의 총재였던 뮈제벡(Ernst Müsebeck)은 아카이브를 '국가 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면서, 아키비스트 직업의 향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아키비스트를 고·중세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문성을 갖춘 만능선수(Generalisten)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가문제는 프로이센 기록학계의 중심 논점이 되어, 폐기지침을 정식화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른다. 그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체되지만 -이 역시 나찌에 의한 정권교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두 글들은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록평가의 방향을 보여준다. 첫째는, 1937년 고타에서 열린 '아카이브의 날' 대회에서 마이스너가 발표한 내용이다.[36] 그에 따르면 기록의 가치는 연대, 기록의 내용, 행정기관의 위상 등 3가지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볼 때 오래된 기록일수록 희소가치를 가지며, 1600년 이전의 기록은 보통 폐기하지 않는다. 둘째, '내용적으로 중요한 기록'이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관의 성립과정에 관한 기

35) Ernst Zipfel, Die Akten der Kriegsgesellschaften im Reichsarchiv, ihre Aufbewahrung, Sichtung und Nutzbarmachung, in: Archivalische Zeitschrift 1926,

36) Heinrich Otto Meisner, Schutz und Pflege des staatlichen Archivgutes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Kassationsproblems, in: Archivalische Zeitschrift 45(1939), pp. 34-51

록, 특히 법률과 규정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영수증을 비롯한 회계문서들이 중요하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기록은 중·하위 기관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기록의 가치가 더 높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일반 행정 기록을 중시하고, 중·하위 기관에서는 그 단위기관에 고유한 특별한 사안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존한다.

이와 더불어, 1939년에 프로이센 국립아카이브 총재 명의로 발행되는 소식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마이네르트는[37] 기록의 정리와 기술에서 출처가 결정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폐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들은 이 관점을 지나치거나,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강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기록은 고립된 낱장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기록 생산기관을 이해하고 그 기관의 구조와 작업방식 및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마르 시대의 평가론은 기록의 가치를 기록생산자의 가치와 연계시키는 동시에, 그 기관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을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하는, 즉 출처주의적 평가론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19세기의 평가론과 대비된다. 이러한 흐름은 브레네케의 정교한 이론체계와 결합하여 쉘렌버그가 정립한 현대 기록학의 토대를 형성한다.

5. 자유로운 출처주의와 사회적 표상

브레네케의 이론[38]은 "기록유기체(Archivkörper)" "사안공동체(Sachge-

37) Hemann Meinert, Die Aktenwertung, Eine methodologische Zusammenfassung, in: Mitteilungsblatt Nr. 5, hrsg. von Generaldirektor der Staatsarchive, Berlin, 1939, pp. 103-110, Menne-Haritz, Provenienzprinzip, p.233에서 재인용

38) 이 부분은 Adolf Brenneke, Archivkunde, pp.21-31, 38-43, 85-92를 요약한 것이다.

meinschaft)" 그리고 "자유로운 출처주의원칙(freie Provenienzprinzip)"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록물을 조직하는 방식, 즉 아카이브의 내적 질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록이 생산된 후 아카이브로 이관될 때까지 행정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와, 기록관리자가 나름대로의 구성체계를 정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이다[39]. 출처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정리원칙으로는 준현용기록군(Registratur)[40]의 기본 구조만을 유지하는 프랑스식의 퐁원칙과, 준현용기록군에 내재하던 체계를 완전하게 복원하려고 하는 네덜란드식의 준현용기록군원칙 외에,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구조를 반영하는 제3의 원칙이 있다. 브레네케는 그것을 "기록유기체 원칙"이라고 표현한다.[41]

브레네케는 출처주의의 이론을 정립한 네덜란드 아키비스트들의 유기체 개념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파악한다. 그들은 유기체가 이미 배태되어 있는 존재법칙을 따라 직선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

39) Brenneke, pp.20-21. 후자는 17세기 이전의 정리방식으로서 실용적-귀납적인 관점으로 구성하는 것과 18세기의 정리방식으로서 합리적-연역적인 관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뉜다.

40) 여기서 말하는 Registratur는 아카이브로 이관되기 이전까지 관리되던 기록군내의 질서를 말한다.

41) 마이스너는 당시 독일 기록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아키비스트의 전문용어를 정리해 발표했다. 그것에 따르면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3가지로 사용된다; 첫째 기록물 보존을 담당하는 건물 전체 즉,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기관, 둘째 기록보존건물 중에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영역 즉 서고, 셋째, 이전에 독립적인 아카이브를 이루고 있다가 이관되어 서고에 (함께) 보존되는 기록물군(Bestand)이다, 이 중 세 번째인 기록물군은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아카이브로 이관된 기록물군의 내적, 외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록유기체와, 행정기관의 기능 보다는 학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조직한 퐁으로 구분된다. H.O. Meisner, Archivarische Berufssprache, in : Archivalische Zeitschrift Bd. 42/43(1934) p.260 마이스너에 있어서 기록유기체는 준현용기록군(Registratur)과 동일한 의미인데, 브레네케는 이 개념을 더 좁게 한정하여 사용한다. Brenneke, p.7, 22

성장과정에서 우연한 외부적 영향에 좌우될 수 있는 불완전한 실체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기록체계의 발전과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변동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많은 요소들이 기록군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고전적인 출처주의는 유기체 발전의 마지막 단계만을 보고 복원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행정기관의 기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관리자는 행정기관의 변화가 없어도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덩어리가 너무 비대해져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정 연도에 종결하고 새로운 기록덩어리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행정기관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록 체계는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네덜란드 아키비스트들은 기록들 속에 내재하는 생명이 기록군의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록관리자가 기록군의 체계를 창조해내는 것이었다.

브레네케의 관점에서 볼 때, 아키비스트의 임무는 “준현용기록군”을 무조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성장의 조건들을 숨겨놓고 있는 기록덩어리들이 그 유기적인 성장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해야 한다. 준현용기록군이 그렇게 (재)조직될 때 “기록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조직원칙은 아키비스트의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자체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준현용기록군을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기 위해서 아키비스트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표현된 모든 요소들을 추적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아키비스트의 활동은 단순한 행정기록관리가 아니라 창조적인 업무가 된다. 그것은 탁월한 감정이입능력을 통해 기록물군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내밀한 법칙들을 엿보고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준현용기록군 속에 내재하는 법칙들을 파악해서 조

직화하는 것을 브레네케는 "자유로운 출처주의"로 명명한다. 이렇게 조직된 기록유기체는 "공동의 생산연원을 토대로 형성된 사안공동체"의 형태를 갖게 된다.

프로이센에서 준현용기록군원칙(Registraturprinzip)[42]이 정립될 때와는 달리, 현대의 준현용기록군은 정교하게 체계화되고 완성된 형태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관리자는 원래의 준현용기록체계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기만 하는 고전적인 역할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브레네케에 따르면 프로이센 아카이브들도 실제로는 1881년에 정립된 준현용기록군원칙을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자유로운 출처주의원칙"을 따르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록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폐기는, 어떤 기록군(Registratur)에서 기록을 폐기하면서, 기록유기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기록군에서 개별 기록들을 떼어낸다는 것은 그 유기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야기한다. "기록유기체"는 결정과 행위의 결과로 탄생해서, 생명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과정의 표현이다. 이 유기적인 몸체를 침해하는 것, 즉 맥락을 분리하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유기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43] 따라서 기록을 폐기하는 과정을, 단순히 기록물 덩어리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치워버리는 것 같은 관점으로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기록유기체의 전체 맥락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개별 기록물이 그 의미상 고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폐기과정은 아키비스트가 하나의 기록물군(Registratur)을 기록유기체로 만들어가는

42) 보통 '등록소원칙'이라고 번역되는 용어인데, 이 시기에 Registratur는 사실상 등록소 개념이 아니라 문서과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위와 같이 번역해 보았다.

43) Brenneke, p.23.

과정이 된다.[44]

브레네케의 이러한 이론에 대해 그의 원고를 보완, 책으로 公刊한 리쉬(W. Leesch)는 이렇게 논평한다. 근대적인 아카이브제도는 19세기를 지나면서 국가 행정기관 구조 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율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18세기의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의 필요에 맞게 정해진 선별원칙에 따라 보존기록을 선별한 후 자신이 정한 정리체계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는 자주적인 위상을 보유했던 반면, 출처주의원칙을 따르는 근대적인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에 보존할 기록의 선별(아카이브 관할권)에 있어서나 기록물 정리(내적질서)에 있어서나 준현용 기록 관리자에게 종속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브레네케는 네덜란드 아키비스트들이 정립한 "준현용기록군원칙"에 이론적으로 대립하는 "자유로운 출처주의원칙"을 주창하면서, 준현용기록군의 관리체계로부터 아카이브의 자율성을 다시 회복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편, 메네-하리츠의 설명에 따르면[45] 브레네케의 새로운 출처주의는 행정기록을 그 생산맥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직하되, 그 기록이 생산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록의 가치를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로 구분하는 쉘렌버그의 이론구조에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46] 그 과정에서 내용지향적인 평가원칙과 출처지향적인 평가원칙

---

44) 브레네케는 기록유기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폐기과정은 대개 그런 변형이 유의미한 보다 중요한 기록군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법원기록이나 덜 중요한 지방기관의 기록군에 있어서 폐기는 단순한 사안별 선별로서 아카이브의 파편들만 남기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renneke, p.43

45) Menne-Haritz, Probenienzprinzip, in: Archivar 47(1994) pp.229-252

46) 다만, 브레네케는 기록의 연관성 유지를 위해 기록의 연원 즉 생산기관을 강조하고, 선별과정과의 조화를 위해 아키비스트의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쉘렌버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생산기관 자체를 다큐멘테이션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브레네케와 쉘렌버그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브레네케의 "자유로운 출처주의원칙" 및 "사안공동체" 개념은 이러한 움직임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그녀가 보기에 이 시기 독일의 기록학 이론은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서 미국 국립아카이브의 평가 작업도 1939년 포스너(Ernst Posner)가 미국으로 이민하기 전까지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평가 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47] 그런데 1950/60년대의 反관료제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출처주의 원칙은 19세기의 유물로 치부되어 거부되고, 바이마르 시대의 새로운 움직임(Ansaetze)들은 잊혀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후 독일에서는 내용지향적인 선별이 지배적인 방법론으로 대두했는데, 이는 기록학 이론에서의 후퇴라고 메네-하리츠는 평가한다.[48]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1957년 코블렌츠에서 열린 '아카이브의 날' 학술행사에서 시작된다. 쌍테[49]는 대규모의 기록을 통제하기 위해 먼저 생산기관에서 기록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록들 중에서 아키비스트가 보존기록을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기능을 분석한 다음, 행정적으로 중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의 기록에만 보존가치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로어[50]는 전체 행정조직의 유기적 구조 안에서 기록생산자의 지위와 그가 생산한 기록의 가치를 동일시하였다. 그는 "가장 가치있는 기록은 최고위

47) Menne-Haritz 위의 글 p.229 ; Wolfgang A. Mommsen, Ernst Posner. Mittler zwischen deutschen und amerikanischen Archivwesen, in: Der Archivar 20(1967) pp.217-230

48) Menne-Haritz 위의 글 p. 235

49) Georg Wilhelm Sante, Behörden-Akten-Archive. Alte Taktik und neue Strategie, in:Archivalische Zeitschrift 54 (1958), 오항녕, 기록학의 평가론, pp.190-191에서 재인용

50) Wilhelm Rohr, Zur Problematik des modernen Aktenwesens, in: Archivalische Zeitschrift 54(1958) p.

수준의 정부에 있는 헌법기구의 기록과 외무부의 기록"이며 "고위 정책과 관련이 없는 모든 기록은 전체 기록에서 가차없이 분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규모의 기록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관'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기록의 양을 줄인 다음, 선별된 핵심기록만을 가지고 아키비스트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쌍테-로어 모델은 내용지향적 선별주의와 출처주의 원칙이 결합된 형태의 평가론이다. 메네-하리츠는 이들의 이론을 내용지향적 평가론으로 분류하고 있다.[51] 그러나 출처주의 원칙에 따라, 즉 기록 생산기관의 위상을 기준으로 '가차없이' 걸러지게 될 방대한 양의 기록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은 결과적으로 출처지향적 평가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찜머만(Zimmermann)은 개별 문서의 객관적 가치에 입각한 확실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영구보존 기록의 가치는 사안별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출처주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52]

내용 지향적 평가이론은 1970년대 봄스(Booms)에게로 이어진다. 그는, 출처주의원칙은 원래 정리의 원칙이지 평가의 원칙은 아니며, 현실상의 편의를 위해 "평가의 대체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아카이브는 한 사회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하며, 과거의 사실이 그 사회에서 가졌던 중요성을 측정하여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때 균형적이고 대표적인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견해가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공의 견해는 공적인 조치를 인가하고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하는 현대사회의 구성요소로서, 아키비스트나 역사가의 편견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기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 아

51) Menne-Haritz, p.235.

52) F. Zimmermann, Wesen und Ermittlung, in : AZ 54 (1958), p.103-122 ; Theorie und Praxis der archivalischen Wertlehre, in : AZ 75(1979), pp.263-280

키비스트와 기관 및 기관 상호간의 협력이 요구된다.[53]

봄스의 이론은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된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소량이지만 더 나은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대의 평가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개념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이 선별 방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전략을 실제에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54] 봄스 자신이 총재로 있었던 서독 연방아카이브의 평가팀도 실제로 봄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그의 제안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유일한 시도였던 동독의 "다큐멘테이션 기본계획(Rahmendokumentationsprofil)"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전 동독 아키비스트는 "그 계획으로는 단 한건의 기록도 평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다.[55] 동독에서의 실패 원인에 대해 봄스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일당독재 하에서는 다큐멘테이션계획의 토대인 공공의 견해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자신의 이론이 추상적이었음을 인정하는 봄스는 연방아카이브에서의 10년간의 평가실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평가방식을 제시하면서 출처주의와의 조화를 모색한다.[56]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 "평가 준비에 있어서 첫 단계는 무엇을 다큐멘테이션 할 것인지 계획하는 일이다. 이는 평가해야 할 기록이 생산된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Daten)들을 나열하는 시대연표(Zeitchronik)를 작

53) Hans Booms,, Gesellschaftsordnung und Überlieferungsbildung. Zur Problematik archivarischer Quellen- bewertung, in : Archivalische Zeitschrift 68(1972), pp.3-40

54) F. Gerald Ham(강경무,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p.34

55) Booms, Überlieferungsbildung, in : archivistica docet pp. 82-84

56) Booms, 위의 글 p.85ff

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연로한 아키비스트에게는 당대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기록생산 시기를 함께 경험하지 못한 젊은 아키비스트에게는 과거 사건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대연표를 통해 아키비스트는 해당 기록이 생산된 시기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에 대해 논의가 되고 논쟁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록생산기관의 업무표(Aufgabenchronik)를 작성하기 위해 기록이 생산된 시기 기록관리기관(Archivtraeger)의 행정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분석은 다큐멘테이션할 사안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하는데 유용하다. 말하자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에 공통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 즉 연관관계(Pertinenzen)를 출처 및 그 기능으로 전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1972년의 제안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기록을 평가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볼 때 출처라는 토대 위에서만 그리고 그 틀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키비스트의 평가는 사안덩어리를 그 생산맥락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사료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 출처는 평가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토대이다. 또한 업무분석은 문서로 작성해서 후에 검색도구에 첨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서 아키비스트의 임무는 이용자의 질문을 행정상의 관할권과 연계함으로써 사료가 있을 만한 출처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내용적인 기록현황조사(Registraturuntersuchung)이다. 독일 연방 아카이브의 경우 그것은 평가일람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연방부서 차원에서 그것은 특정 기록(Registraturteilen)들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연구부의 경우 몇몇 부서들은 연구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지원받았는가 하는 사항은 매년 간행되는 활동보고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서목

록은 주저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평가일람표는 연방부서에 부속되어 있는 150여개의 공공기관에 특히 적합하다. 연방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는 이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평가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들만 평가를 위해 연방아카이브로 이관된다."

이러한 내용지향적인 평가방식은 아카이브의 학문적 기능을 중시하며 아키비스트를 역사가로 인식하는 에어하르트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보도 울(Bodo Uhl)의 설명[57]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내용중심의 계획적인 기록관리가 이데올로기 또는 권력의 시녀역할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메네-하리츠의 지적도 주의깊에 들어야 한다. 그녀는 동독의 사례가 내용지향적인 평가방식의 위험성, 즉 아카이브작업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아키비스트가 정치적 목표의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결국 기록학의 자율성을 박탈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대 아카이브의 핵심기능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증거를 解讀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아키비스트의 독자적인 역할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녀는 출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쉘렌버그의 평가론을 수용하는 것이 기록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변한다.[58]

6. 맺는 말

20세기 이후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기록관리의 목적

57) Botho Uhl, Der Wandel der archivischen Bewertungsdiskussionn, in: Der Archivar 43(1990), pp.529-538

58) Menne-Haritz, 위의 글 p.251

으로 강조되면서, 기록 생산자 자체 및 그의 활동을 증거하는 능력이 기록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행정적 활동에 대한 관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그리고 출처주의에 입각한 평가론으로 요약되는 바이마르시대의 평가론은 국가가 사회를 강하게 주도했던 1차대전과 그에 뒤이은 격동기의 산물이다. 메네-하리츠는 현대사회를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출처주의에 입각한 평가론이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을 하고 그것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자와 생산맥락을 추적한다는 것과, 그 기록이 생산자 및 생산자의 활동의 맥락을 잘 증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쉘렌버그가 기록의 증거가치를 말할 때 그 '증거'란 생산자의 조직 및 활동을 증거 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기록의 정보적 가치라는 관점을 추가함으로써 스스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근간으로 하는 그의 평가론에서는, 봄스의 지적대로, 국가기관이 절대화되고 국가제도 중심의 왜곡된 사회상을 남길 개연성은 여전하다. 1990년대 이후 영미권의 담론이 봄스식의 내용지향적 평가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봄스의 거시적 관점과 쉘렌버그의 미시적 기술을 잘 조합하는 보다 총체적인 평가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s

Bewertungsdiskussion in der deutschen Archivtheorie

Kim, Hyun-Jin

In diesem Aufsatz wird die Geschichte der Bewertungsdiskussion in Deutschland vorgestellt.

Bis zum 18. Jh. war das Ziel der Archivarbeit die Systematisierung der rechtlichen und politischen Kenntnissen. Der juristisch geschulte Archivar hob Unterlagen in der Regel aus Gründen der Rechtssicherheit auf. Vernichtet wurde, was schon seit längerem im Archiv lag.

Nach dem Zusammenfall des alten Regimes haben die Archivare keine mehr mit dem Recht des Herrschers zu tun. Und die Archive wurden zu Lagerstätten der Geschichte und Forschung. Für den Ordnung der Archivgut, die aus den verschiedener Dienststellen stammten, wurde das Provenienzprinzip gebildet. Die Archivare richtete sich auf das inhaltsorientierten Bewertungsverfahren, das die wissenschaftlichen Bedürfnisse befriedigte.

Der Anlass der Bildung der modernen Archivtheorie war der ersten Weltkrieg. Das Problem, wie man die Massenakten, die während dieses Krieges entstanden, behandeln sollten, führte unter dem Einfluß der Demokratie zur Bildung der Provenienz-orientierte Bewertungsdiskussion. Aufbau, Zielsetzung und Verfahren der aktenbildenden Stelle bildeten den Ausgang der Bewertung.

Im Klima öffentlicher Bürokratieablehnung der 50er und 60er Jahren wurde die inhaltsorientierte Auswahl wieder die vorherrschende Methodenvorgabe. Diese Theorie, die Booms vertritt, führt zu der Theorie der dokumentation strategy von Ende 20. Jh.

Key words : deutsche Archivtheorie, Bewertung, Provenienzprinzip, Brenneke, Menne-Haritz, Booms